

영등포구의회
제17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
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김용범의원 대표발의】



2013. 9. 9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38호로 2013년 9월 3일 김용범의원 외 4명으로
부터 발의되어 2013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일자리 감소와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인 협동조합을
육성·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
시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
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에게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동
조합 지원·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그 결과를
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(안 제3조)
- 나. 협동조합 활성화와 지원 등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
위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함
(안 제4조 ~ 안 제8조)

다. 협동조합 등의 설립·운영 활성화 및 자립을 위한 경영 지원,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라. 협동조합 제품의 우선 구매와 민간기업, 대학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 ~ 안 제12조)

마.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활동 장려를 위한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협동조합 기본법」

5. 검토의견

○ 이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·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,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이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해당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사항을 규정 하였으며,

- 안 제4조에서부터 제8조까지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협동조합 지원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음.
 - 안 제9조 및 제10조, 안 제13조에서는 경영지원, 교육훈련 지원, 재정지원,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협동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와 민간기업, 대학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협동조합 활동의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공동체에 의한 자치적 경영모델로 시장경쟁체제에서의 소득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고 공생·발전할 수 있는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 ·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2013년 8월 1일자로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따라 “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”가 자치구로 위임된 시점에서,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협동조합의

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
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구의 협동
조합 설립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
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.

- 참고로 2013년 8월 31일 기준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협동
조합은 총 50개소 임.